



제 418회 국회(정기회)
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<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추가 >
■ 임오경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3474호)

2024. 11.
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전문위원 전완희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추가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: 임오경의원 등 10인
2. 발 의 일: 2024. 9. 2.
3. 회 부 일: 2024. 9. 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6조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(이하 '진흥공단')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진흥공단의 설립근거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내용이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인지도가 저조하고 효율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진흥공단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'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'을 추가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(안 제36조제1항제6호).

Ⅲ. 검토의견

1.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추가

가. 개정안의 요지

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 ‘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’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).

[개정안 조문 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36조(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)	제36조(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)
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(이하 “진흥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6.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</u>
<u>6.</u> (생략)	<u>7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나. 검토의견

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¹⁾,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업체에 대한 금융(융자, 펀드) 지원 등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2,559억 6,2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.

[표] 스포츠산업 진흥 관련 사업 수행 현황

수행기관	구분	'24년 예산 내역 (단위: 백만원)	
국민체육진흥공단	금융 지원	194,051	융자 163,730/ 모태펀드 출자금 30,321
	산업 활성화	59,571	기업경영 지원 22,565/ 일자리 및 창업지원 15,881 지역스포츠산업 지원 905/ 첨단기술혁신 지원 12,070
	전문인력 양성	2,340	체육분야 인턴십 1,360/ 융복합대학원 운영 980
	소계	255,962	-
한국콘텐츠진흥원	R&D	2,940	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2,140/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 800
계		258,902	-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1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. <개정 2012. 2. 17., 2014. 12. 23., 2015. 3. 27., 2016. 5. 29., 2017. 12. 19., 2020. 2. 4., 2020. 8. 18., 2020. 12. 8., 2021. 8. 10.>

-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·개발 및 그 보급 사업
-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
- 선수과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
- 「체육인 복지법」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
-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
- 삭제 <2021. 8. 10.>
-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
-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
- 삭제 <2014. 12. 23.>
-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,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·지원
-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
- 11의2.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
- 11의3.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·피해자 지원
12.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바,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 ‘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’을 추가하려는 것임.

[표]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적 사업 내용

현행	개정안
-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기념사업 -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,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- 체육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·임대 등 운영사업 - 체육과학의 연구 - 체육분야 전반의 복지사업 -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	
-	-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

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,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문의처

02)6788-5375